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8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한창민 · 서영교 · 민병덕
조계원 · 임미애 · 박홍배
최혁진 · 한정애 · 박희승
이성윤 · 임오경 · 박지원
정혜경 · 김종민 · 황운하
김남근 · 백승아 · 전종덕
윤종오 · 김문수 의원
(20인)

제안이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현행법에 따라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¹⁾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

보임.

또한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고려하여 강제송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반되는 아동동반 가족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구금을 막기 위해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전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및 그와 유사한 구금 조치를 금지함. 외국인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거의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보증금 예치는 제외함)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및 그 일시해제 심사, 외국인아동에 대한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외국인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최상의 이익에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포함함(안 제63조의4 신설).

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아동에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아동 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외국인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함(안 제63조의4 신설).

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다. 법에 따른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66조의3).

라. 외국인아동이나 그 부모가 현행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 전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외국인아동의 보호 금지 등) ① 제51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18세 미만의 외국인(이하 “외국인아동”이라 한다)을 보호시설에서 보호(거주 및 생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 대한 보호로 인하여 외국인아동과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분리된 경우 제65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보증금의 예치를 제외한다)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보호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아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의 보호와 그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 외국인아동에 대한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외국인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상의 이익에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 결합권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된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한국으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5일”을 “5일(외국인아동 또는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아동 또는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에”를 “제4항과 제5항에”로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아동 또는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3조의4(외국인아동의 보호 금지 등) ① 제51조 및 제63조에</u> <u>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u> <u>은 18세 미만의 외국인(이하</u> <u>“외국인아동”이라 한다)을 보호</u> <u>시설에서 보호(거주 및 생활하</u> <u>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u> <u>다.</u> <u>②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u> <u>모에 대한 보호로 인하여 외국</u> <u>인아동과 외국인아동의 보호자</u> <u>인 부모가 분리된 경우 제65조</u> <u>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u> <u>의 장의 직권 또는 피보호자</u> <u>(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u> <u>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u> <u>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u> <u>결정에 의하여 주거의 제한, 정</u> <u>기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조</u> <u>건(보증금의 예치를 제외한다)</u> <u>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u> <u>있다.</u> <u>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51조</u>

및 제63조에 따라 보호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아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의 보호와 그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 외국인아동에 대한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외국인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상의 이익에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 결합권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된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생략)

<신설>

제67조(출국권고) ① (생략)

<신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출국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외국인아동 또는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

④ 제3항에-----

5일(외국인아동 또는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1

제68조(출국명령) ① (생략)

<신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

4일)-----
-----.

제68조(출국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아동 또는 외국인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

④ 제3항에-----

-----.

⑤ -----

----제4항에-----

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⑥ 제4항과 제5항에----- ----- ----- -----.
---	---